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규정상 위험시설물에 설치하는 위험표지 문구 예시가 교량·터널 등 토목시설을 전제로 작성되어 건축물·공동주택 대상 위험표지 문구 예시를 추가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의 위험표지 설치 요령란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문구: 시설물의 종류, 주변 환경 등 제반 조건에 따라 적정 문구를 선택(예시 - 건축물(공동주택): “본 건축물(공동주택) 출입을 금지하며 건축물(공동주택) 근처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”)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